|  |  |  |
| --- | --- | --- |
| **질량감독국검험검역 행정허가**  **실시방법**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령 제149호**  **《질량감독검험검역 행정허가 실시방법》은 2012년 6월 27일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바, 이에 공포하며,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2012년 10월 26일**  **제1장 총 칙**  **제1조 질량감독검험검역 행정허가 행위를 규범화 하고 행청허가의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국민, 법인,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등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각 급 출입국 검험검역국과 질량기술감독국(이하 “각 급 ‘질검부문’으로 통칭)은 행정허가 시행 및 행정허가한 감독관리에 대해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각 급 질검부문은 법률, 법규, 규장규정의 직권범위 안에서 법정조건과 절차에 따라 행정허가를 시행한다.**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제정한 규범성 문건은 법정 행정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행정허가 시행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정할 수 있다. 단, 상위 법을 위반하는 기타조건을 증설할 수 없다. 규범성 문건은 공고형식으로 사회에 공포해야 하며, 공포를 거치지 않은 경우, 행정허가의 근거로 시행할 수 없다.**  **제4조 각급 질검부문이 행정허가를 시행할 때, 적절한 방식으로 시행하는 행정허가 사항의 명칭, 근거, 실시주체, 조건, 절차, 기한, 비용수취 근거(비용수취 항목 및 표준) 및 제출해야 하는 전체 자료의 목록 등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법정조건과 표준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인은 법에 의거하여 행정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제5조 각급 질검부문이 행정허가를 시행할 때, 고효율, 시민 편의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행정허가 신청을 일괄 수리하고 행정허가 결정을 일괄 송달한다.**  **제6조 각급 질검부문은 건전한 행정허가 시행 업무관리 제도와 감독제도를 건립해야 하며, 행정허가 각 항의 시행절차 및 직무책임을 명확히 하고, 본 급 및 하급 질검부문의 행정허가 시행에 대해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제7조 각 급 질검부문은 건전하고 완벽한 직무 교육훈련 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행정허가 시행 업무인원의 조직에 대해 법률, 법규 및 업무 지식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정기적으로 지식 업데이트 교육훈련을 진행해야 한다.**  **행정허가시행 업무인원은 교육훈련 후에야 행정허가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2장 시행기관**  **제8조 각급 질검부문은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행정허가의 시행업무에 책임을 진다.**  **제9조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및 국무원 행정심사비준 제도 개혁업무 요구에 따라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실제 업무 수요에 근거하여 관리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책임 시행한 행정허가 사항을 하급 질검부문이 시행하도록 이관할 수 있다.**  **관리등급 하향조정을 결정한 행정허가 사항은 공고형식으로 사회에 공포해야 한다.**  **제10조 상급 질검부문은 그 법정 직권범위 내에서 실제 업무수요에 근거하여 책임 시행하는 행정허가 사항을 하급 질검부문이 시행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이 시행한 행정허가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법률책임을 가진다.**  **수탁기관은 위탁한 권한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의 명의로 법에 의거하여 행정허가를 시행한다. 기타 조직 또는 개인에게 행정허가 시행을 재 위탁 할 수 없다.**  **제11조 행정허가 시행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관은 행정허가의 수리, 심사(대조심사), 결정 등 권한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행정허가 시행을 위탁할 때,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위탁서 체결을 해야 하며, 위탁서는 아래의 주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위탁기관 명칭**  **(2) 수탁기관 명칭**  **(3) 행정허가 시행을 위탁한 사항의 명칭 및 위탁 권한 범위**  **(4)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권리와 의무**  **(5) 행정허가 시행의 위탁기한**  **위탁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위탁기관은 행정허가 위탁서 유효기간 만료 15일 전에 수탁기관과 위탁서 갱신 체결을 해야 한다.**  **제12조 위탁기관은 수탁기관과 시행을 위탁한 행정허가 사항의 명칭, 위탁 권한범위, 위탁기한 등 내용을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수탁기관은 본 방법 제4조 규정에 따라 행정허가 시행을 수탁한 행정허가 유관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위탁기관이 행정허가 위탁을 변경, 중지 또는 종결하는 경우, 즉시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제13조 각급 질검부문이 행정허가를 시행할 때, 법에 따라 설비, 시설, 제품, 물품 등에 대해 검험, 검측, 검역 또는 감정, 전문가 평가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것 이외에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전문 기술조직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위탁을 받은 전문기술조직 및 그 업무인원은 시행하는 검험, 검측, 검역결론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가진다.**  **제3장 시행절차**  **제1절 신청과 수리**  **제14조 국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행정허가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서식 문건을 사용할 경우, 질검부문은 신청인에게 서식문건을 제공해야 한다. 신청서식 문건은 행정허가 사항 신청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제15조 신청인은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행정허가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단, 법에 의거하여 신청인 본인이 행정허가 신청을 제기해야만 하는 것은 제외한다.**  **위탁대리인이 행정허가 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위탁서 원본 및 위탁쌍방의 신분증명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신청인이 질검부문에 공시내용에 대해 설명,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 질검부문은 설명, 해석해야 하며,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17조 신청인이 질검부문의 사무장소에서 행정허가 신청을 제기할 때, 신청서 및 질검부문이 공시한 제출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서한, 전보, 텔렉스, 팩스, 전자데이터 전달과 전자우편 방식을 통해 행정허가 신청을 제기할 때, 질검부문이 공시한 법정형식에 부합하는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은 그 제출한 신청자료의 실질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 신청인이 질검부문 사무장소에서 신청을 제기할 때, 신청인이 신청자료를 제출한 시간을 신청시간으로 한다.**  **신청인이 서한, 전보, 텔렉스, 팩스, 전자데이터 전달과 전자우편 방식을 통해 신청할 때, 질검부문의 수령시간을 신청제출 시간으로 한다. 법에 따라 신청자료를 대조해야 할 경우 질검부문은 신청자료 원본을 접수한 일자를 신청한 시간으로 간주한다.**  **제19조 질검부문은 신청인이 제출한 행정허가 신청에 대해, 아래의 정황에 근거하여 구분하여 처리한다.**  **(1) 신청사항이 법에 의거하여 행정허가를 취득할 필요가 없을 경우, 즉시 신청인에게 수리거절을 고지해야 한다.**  **(2) 신청사항이 법에 의거하여 본 행정기관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즉시 수리할 수 없음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유관 행정기관에 신청하도록 고지한다.**  **(3) 신청자료에 현장에서 바로 정정할 수 있는 착오가 존재하는 경우, 신청인이 현장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  **(4) 신청자료가 완비되지 못했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현장 또는 신청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신청인에게 보충 수정이 필요한 전체내용을 1회성 고지한다. 기한이 지나도록 고지하지 않은 경우, 신청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즉시 수리한다.**  **(5) 신청사항이 본 행정기관 직권범위 내에 속하고, 신청자료가 완비, 법정형식에 부합하는 경우, 또는 신청인이 본 행정기관의 요구에 따라 신청자료를 전체 보충 수정하는 경우, 행정허가 신청을 수리해야 한다.**  **제20조 질검부문이 행정허가 신청을 수리하거나 수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신청인에게 신청자료의 보충 수정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본 행정기관의 행정허가 전용인감을 날인하고 날짜가 명기된 서면 증빙을 발급하여 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발송해야 한다. 행정허가 시행을 위탁한 경우, 위탁기관이 발급한 서면증빙은 위탁기관 행정허가 전용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신청인이 서한, 전보, 텔렉스, 팩스, 전자데이터 전달과 전자우편 방식을 통해 행정허가 신청을 제기할 때, 질검부문은 상기 규정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신청인에게 행정허가 신청의 처리정황을 고지해야 한다.**  **제21조 각 급 질검부문은 건전하고 완벽한 행정허가 전자관리시스템을 건립하고, 전자 정무(政务)를 촉진하여 신청인이 데이터 전자문서 등의 방식을 취해 행정허가 신청을 제기하기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  **제2절 심사와 결정**  **제22조 질검부문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자료에 대해 즉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자료가 완전하고 법정형식에 부합하며, 현장에서 행정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 현장에서 행정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에 의거하여 신청자료 실질내용에 대해 진상조사가 필요한 경우, 2명 이상의 심사인원을 파견하여 현장 진상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심사인원은 유관 심사요구를 엄격히 준수하여 심사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신청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타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신청인이 서한, 전보, 텔렉스, 팩스, 전자데이터 전달과 전자우편 방식을 통해 신청할 때, 심사인원이 현장조사 시, 신청자료 원본을 대조하고 대조정황을 명기해야 한다. 신청인이 신청자료 원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진상조사에서 신청자료와 원본이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하는 경우, 질검부문은 행정허가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제23조 검험, 검측, 검역 또는 감정, 전문가 평가심사 활동에 책임을 지는 전문기술 조직 및 그 업무인원은 법률, 법규, 규장 및 표준, 기술규범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법률, 법규, 규장 및 표준, 기술규범이 검험, 검측, 검역 또는 감정, 전문가 평가심사 기한에 대해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규정이 없는 경우, 합리적인 기한 내에 완성해야 한다.**  **제24조 법률, 법규, 규장의 규정에 행정허가 시행에 의견청취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질검부문이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타 공공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행정허가 사항은 질검부문이 사회에 공고하여 의견청취를 진행해야 한다. 행정허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신청인이 타인과 중대한 이익 관계에 있을 때, 질검부문은 행정허가 결정 전에 신청인, 이해관계인이 의견청취 요구 권리를 향유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의견청취 절차 및 기한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47조,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5조 신청인의 신청이 법정 조건, 표준에 부합하는 경우, 질검부문은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승낙하는 서면결정을 내려야 한다.**  **질검부문이 법에 의거하여 행정허가를 승낙하지 않는 서면 결정을 내리는 경우,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인에게 법에 의거하여 행정심의 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권리를 향유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질검부문이 행정허가를 승낙 또는 하지 않는 경우, 본 행정기관의 인감을 날인하고 날짜를 명기한 서면증빙을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법에 따라 발송해야 한다. 행정허가 시행을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이 발급한 서면 증빙은 위탁기관의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제26조 질검부문이 내린 행정허가 승낙 결정은 국가기밀, 상업기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하며, 대중들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제3절 기한과 발송**  **제27조 현장에서 행정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질검부문이 행정허가 결정을 내리는 기한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42조, 제43조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수탁기관은 위탁기관이 규정한 처리기한 내에 위탁사항을 완수해야 한다.**  **제28조 각급 질검부문이 내린 행정허가 결정이 법에 의거하여 의견청취, 검험, 검측, 검역 또는 감정, 전문가 심사평가가 필요한 경우, 이에 필요시간은 본 절(**节**)이 규정한 기한 내에 계산하지 않는다.**  **질검부문은 소요시간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29조 각급 질검부문이 법에 의거하여 행정허가 결정을 내리고 행정허가 증서 발급 또는 꼬리표 부착, 검험/검측/검역 인감 날인이 필요한 경우, 결정일로부터 10일 내에 신청인에게 행정허가증서를 송달하거나 꼬리표 부착, 검험/검측/검역 인감을 날인한다.**  **제30조 각급 질검부문이 현장에서 제작한 행정허가 문서, 증서는 즉시 신청인에게 직접 송달해야 한다.**  **질검부문은 서한, 전보, 텔렉스, 팩스, 전자우편 방식을 통해 신청인에게 행정허가 문건, 증서 수령을 통지할 수 있으며, 직접 또는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질검부문은 실제정황에 근거하여 기타 질검부문에 대리 송달을 위탁할 수 있다.**  **질검부문이 직접송달, 우편송달 또는 위탁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 본 기관의 웹사이트 홈 화면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으로 송달을 공고할 수 있다.**  **제31조 직접송달 또는 위탁송달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기타 대리인의 수령확인 서명일을 송달일로 한다.**  **우편송달의 경우, 우편배달 증명상 기재된 수령일자를 송달일로 한다.**  **송달을 공고할 경우, 출발공고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송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2조 신청인은 질검부문의 행정허가 문서, 증서송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유효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인으로 인해 행정허가 문서, 증서를 기한 내에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그에 상응하는 법률적 결과에 책임을 진다.**  **제4절 변경과 연장**  **제33조 행정허가의 법정 정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피허가인은 법에 따라 변경신청을 제기해야 한다.**  **변경신청이 법정조건, 표준에 부합하는 경우, 질검부문은 법에 의거하여 변경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34조 피허가인이 행정허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행정허가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행정허가를 결정하는 질검부문에 신청해야 한다. 법률, 법규, 규장에 신청기간에 대해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35조 피허가인이 규정기한 내에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행정허가 연장가능 법정조건에 미부합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질검부문이 해당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  **피허가인이 계속하여 행정허가 사항에 해당하는 활동을 필요로 하는 경우, 행정허가 신청을 새로 제기해야 한다. 원 행정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새로 신청한 행정허가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는 행정허가 사항에 해당하는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36조 각급 질검부문은 그 책임 시행하는 행정허가 사항에 대해 적절한 방식으로 행정허가 변경, 연장 신청기한 및 처리절차, 기한초과 신청의 법률 결과 등에 대한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제37조 행정허가를 위탁 실시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기한 및 본 절(节) 규정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행정허가 변경, 연장 업무를 처리한다.**  **제38조 행정허가 증서의 유실 또는 훼손으로 인해 피허가인이 재처리해야 하는 경우, 요구에 따라 공개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에 행정허가 증서 분실성명을 등재해야 한다. 성명 중에는 재처리신청 원인, 60일 이의기한, 이의 수리전화 등 내용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행정허가를 결정하는 질검부문이 행정허가 증서를 재처리할 때, 원 행정허가 증서의 내용(발급시간 포함)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없다.**  **제5절 중지와 퇴출**  **제39조** 질검부문은 행정허가신청 수리 후, 행정허가결정 이전에 다음 열거한 상황 중 한 가지라도 포함될 시, 마땅히 행정허가수속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신청사항이 법에 근거하여 행정허가 취득이 불필요할 경우  (2) 신청사항이 법에 근거하여 본 행정기관의 직권범위 내에 속하지 않을 경우  (3) 신청인이 규정기한 내에 관련 신청자료를 보충 수정하지 않은 경우  (4) 신청인이 행정허가신청을 철회 한 경우  (5) 국민, 법인, 또는 기타기관의 특정자격을 부여하는 행정허가가 해당 국민이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 법인 또는 기타 기관이 법에 의해 중지 된 경우  (6) 법에 의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신청인이 규정 기한 내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7) 기타 법에 근거하여 행정허가 수속을 마땅히 중지해야 하는 경우  질검부문이 행정허가수속을 중지할 경우, 본 행정기관의 행정허가 전용 인감을 날인하고 기일을 명시한 서면증서를 발행하여 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행정허가 시행을 위탁할 경우, 피위탁기관이 발행한 서면증서에 마땅히 위탁기관 행정허가전용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행정허가 신청을 철회 할 경우, 질검부문이 행정허가수속을 중지한 증서를 수령한 이후 6개월 이내에 재차 해당 행정허가신청을 제출 할 수 없다.  **제40조** 행정허가수속이 중지 되었을 때 신청인이 이미 비용을 지불하였다면 질검부문은 마땅히 신청인에게 비용을 환불해야 한다. 단, 지불항목이 포함하는 허가단계가 이미 완성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41조** 법에 의거하여 피허가인이 취득한 행정허가증서를 취소 할 경우, 행정허가를 승낙한 질검부문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및 총국규정 등 처리 절차 규정에 따라 행정허가증서를 취소하는 행정처벌결정을 한다.  행정허가를 승낙한 질검부문은 자체 또는 하급 질검부문을 지정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및 총국규정 등 처리 절차 규정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조사검증, 권리통지, 청문회 조직 등 단계적 의무를 이행하고 행정처벌결정을 송달 및 집행할 수 있다.  각급 질검부문은 감독관리 업무 중 피허가인에게 행정허가증서를 취소해야 하는 위법 상황을 발견 한 경우, 적시에 행정허가증서를 취소하는 사실, 이유, 근거 및 관련 증거자료를 단계별로 상부에 보고하거나 행정허가를 승낙한 질검부문에 통보한다.  **제42조** 법에 의거하여 피허가인이 취득한 행정허가를 철회 할 경우, 행정허가를 승낙한 질검부문은 행정허가 철회 결정을 한다.  행정허가 철회 결정 전에 행정허가를 승낙한 질검부문은 자체 또는 하급 질검부문을 지정하여 통지의무를 이행하고, 행정허가 취소 사실, 이유 및 근거, 피허가인의 진술 청취, 해명 또는 청문회 조직 등을 설명하고, 법에 의거하여 행정허가 철회 결정을 송달 및 집행한다.  각급 질검부문은 감독관리 업무 중 피허가인에게 행정허가를 철회 해야 하는 위법 상황을 발견 한 경우, 적시에 행정허가를 철회하는 사실, 이유, 근거 및 관련 증거자료를 단계별로 상부에 보고하거나 행정허가를 승낙한 질검부문에 통보한다.  **제43조** 행정허가가 근거하는 법률, 법규, 규장수정 또는 폐지 또는 행정허가를 승낙한 근거가 되는 객관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의 원인으로, 피허가인이 취득한 행정허가를 변경 또는 철회해야만 하는 경우, 행정허가를 승낙한 질검부문은 행정허가의 변경 또는 철회 결정을 한다. 이로 인해 피허가인에게 재산손해가 초래되면 행정허가를 승낙한 질검부문에서 응당 법에 따라 보상한다.  행정허가 변경 또는 철회 결정 시, 행정허가 변경 또는 철회 사실, 이유와 근거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행정허가 변경 또는 철회결정의 송달과 집행은 행정허가를 승낙한 질검부문에서 자체 또는 하급 질검부문을 지정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제44조**다음 열거한 상황 중 하나라도 포함 될 시, 행정허가를 승낙한 질검부문은 법에 의해 관련 행정허가의 취소수속을 하며 공고해야 한다.  (1) 행정허가가 법에 의거하여 취소, 철회, 또는 행정허가증서가 법에 의거하여 취소된 경우  (2) 행정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연장하지 않은 경우  (3) 국민특정자격을 부여하는 행정허가인데 해당 국민이 사망 또는 행위능력을 상실 하였을 경우  (4)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법에 의해 종지되었을 경우  (5) 피허가인이 행정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6)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행정허가사항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된 경우  (7) 기타 법에 의해 응당 행정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  각급 질검부문은 상기 규정에 대해 응당 정기적으로 심의, 종합하여야 하며 행정허가를 승낙한 질검부문에 단계적으로 보고하고, 법에 의거하여 취소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4장 감독관리**  **제1절 행정허가 평가**  **제45조**성급 이상 질검부문은 응당 업무 수요에 근거하여, 본 기관 및 하급 질검부문의 행정허가 실시 상황 및 존재 필요성에 대해 평가한다.  **제46조** 질검부문은 자체적으로 행정허가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관련 평가기구 또는 조직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평가 방안으로 공청회, 심의회, 좌담회 등의 형식을 차용하여 국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 및 전문가학자의 의견, 건의를 청취 할 수 있다.  **제47조**행정허가 평가 내용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전체 상황  (2) 행정허가 실시의 사회적 효과와 사회 자본  (3) 행정허가 실시가 기대되는 관리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여부  (4) 행정허가 실시 과정 중 부딪히는 문제와 원인  (5) 행정허가를 계속 실시해야 하는 필요성과 합리성  (6) 기타 평가가 요구되는 내용  **제48조**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평가 완성 후, 응당 평가한 행정평가사항에 대해 취소, 보류, 합병 또는 관리등급을 하급기관에 이양하는 등의 의견 및 건의를 제시해야 하며 평가 보고 및 행정허가의 설정기관을 보고해야 한다.**  **성급 질검부문은 평가완성 후 응당 평가보고 및 의견과 건의사항을 국가질량감독검험검 역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자치법규가 설정한 행정허가사항에 대한 평가보고, 의견 및 건의를 행정허가의 설정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에 복사하여 발송한다.**  **제2절 내부감독**  **제49조**상급질검부문은 응당 정기, 비정기적으로 행정집행책임제심사 및 검사, 행정허가 문건 평가검사, 행정허가전문항목 검사, 신고안건 처리 등 형식으로, 하급 질검부문 행정허가 실시 감독 검사를 한 층 강화하여, 행정허가 실시 중 위법 또는 부당행위를 적시에 발견, 교정한다.  **제50조**행정허가 실시 위탁 시, 위탁기관은 응당 정기, 비정기적으로 심의검증 등 방식으로 피위탁기관의 행정허가 실시에 대한 감독검사를 한층 강화하여, 행정허가 실시 중 위법 또는 부당행위를 적시에 발견, 교정한다.  **제51조** 질검부문은 완전한 감독제도를 건립하여 전문기술조직 및 기타 직원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검증, 검측, 검역 또는 감정, 전문가 심사 활동 중의 위법 또는 부당행위를 적시에 발견, 교정한다  **제3절 피허가인에 대한 감독**  **제52조** 각급 질검부문은 응당 완전한 행정허가후속감독검사제도를 건립하여 본 행정구역 내 피허가인의 후속감독, 피허가인이 행정허가를 획득 할 시의 조건과 요구사항을 지속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제53조** 각급 질검부문은 본 행정구역내의 피허가인에 대하여 감독검사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질검부문이 법에 의거하여 감독검사 시, 검사상황과 처리결과를 기록해야 하며, 감독감사인원이 서명하여 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4조** 각급 질검부문은 감독검사직권에 근거 또는 신고, 고발, 상급부문의 지시대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본 행정구역 내 피허가인의 위법행위단서를 찾아 적시에 진상을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진상조사상황 및 처리결과는 본 방법 제 53조 규정에 따라 문서로 보관한다.  각급 질검부문은 행정처벌관할원칙에 따라 피허가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을 시행하며 피허가인의 위법사항, 처리결과는 단계적으로 상부에 보고 또는 행정허가를 승낙한 질검부문에 보고 한다.  **제55조** 각급 질검부문은 감독검사 시행 시, 법에 의거하여 사열 또는 피허가인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허가인이 생산 경영한 상품에 대하여는 법에 의거하여 표본조사, 검사, 측정하며 해당 생산경영장소에 대하여 법에 의거하여 현장검사를 할 수 있다.  유관법률, 법규, 규장이 감독검사의 방법, 수단과 조치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한 경우 해당규정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피허가인은 응당 행정집행요원의 감독감사에 협력하여야 하며, 종사에 상응하는 행정허가사항활동의 유관 정황 및 재료를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56조** 각급 질검부문에서 감독검사 시행 시, 피허가인의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피허가인에게 재물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도 안 되고, 그 외 기타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제 5 장 법률책임**  **제57조** 본 방법의 규정 위반 시, 다음 중 하나의 경우, 상급 질검부문이 책임지며 지정  기일 내 시정하고 비평을 통보한다.  (1) 본 방법 제 4조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허가의 관련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2) 본 방법 제 5조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허가 신청을 일괄 수리하고 행정허가 결정을 일괄 송달하지 않은 경우**  **(3) 행정허가위탁실시, 행정허가 위탁서 주요내용 또는 변경, 중지, 종지상황이 사회에 공고, 공개하지 않은 경우**  (4) 행정허가 변경, 연장 신청기한 또는 처리절차,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법률 결과 등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5) 본 방법 규정에 따라 후속 감독감사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행정허가 감독검사 문서를 건립하지 않은 경우  **제58조**본 방법의 규정 위반 시, 다음 중 하나의 경우, 본 기관 또는 상급 질검부문이 책임지며 시정하고, 비평을 통보하며, 직접 책임지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져야 하는 요원들은 법에 의거하여 상응하는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1) 법정근거가 없거나 법정항목과 표준에 따르지 않고 행정허가비용을 수납한 경우  (2) 행정허가 수속이 종지되었는데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허가 비용을 환불하지 않은 경우  (3) 행정허가 회수, 취소, 철회, 말소 시 규정절차대로 실시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행정허가수속, 후속감독검사실시 과정 중, 타인의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에 지장을 주어 심각한 영향을 끼치거나, 타인에게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여 기타이익을 도모한 경우  (5) 법에 의거하여 행정허가후속감독검사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발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에 따라 상부보고 및 통보를 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제59조**본 방법의 제 10조 규정을 위반하여, 피위탁기관이 위탁권한범위를 초월하거나 기타조직이나 개인에게 재 위탁하여 행정허가를 실시할 경우 행정허가 실시는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위탁기관이 책임지고 시정하며 통보하고 직접책임자 및 관련인원 또한 법에 따라 행정 처분한다.  **제60조** 본 방법의 제23조 규정을 위반하여, 검험, 검측, 검역 또는 감정, 전문가 평가심사 활동에 책임을 지는 전문기술조직 및 그 업무인원이 법률, 법규, 규장 및 표준, 기술규범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질검부분이 책임지고 시정한다. 경위가 심각할 경우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종사와 행정허가 관련한 검험, 검측, 검역자격을 취소한다. 법률, 법규, 규장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규정을 따른다.  전문기술 조직 및 그 업무인원이 법을 위반하여 검험, 검측, 검역 또는 감정, 전문가 평가심사를 실시하여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초래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제61조** 피허가인이 구비해야 하는 조건 및 행정허가사항 활동 종사요구를 지속하여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질검부문이 법에 의하여 감독 검사하는 것에 비협조, 거절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시정하기를 거부하거나 정한 기일을 넘기도록 시정하지 않는 경우, 3만 위안 이하 벌금에 처하고 그 행정허가를 취소한다. 법률, 법규, 규장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은 그 규정을 따른다.  **제6장 부 칙**  **제62조** 각 질검부문이 행정허가를 시행하는데 응당 일괄 규범의 행정허가문서를 사용해야 한다. 행정허가를 시행하는 과정 중 형성된 자료는 응당 국가공문서관리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서류철에 분류 보관한다.  **제63조** 공고기한을 제외하고 본 방법규정의 질검부문이 실시하는 행정허가의 기한은 업무 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법정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64조**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및 질량감독검험검역시스템 내 법률법규 수권 조직은 법적 직권 범위 내에서 행정허가를 시행하며 본 방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제65조** 본 방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질량감독검험검역 행정허가 위탁실시방법》（국가질검총국령제64호）동시에 폐지한다.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본 방법 실행 전 공표한 관련행정허가의 규장과 본 방법 규정의 행정허가 시행 절차가 불일치할 경우 본 방법을 기준으로 한다. |  | **质量监督检验检疫行政许可**  **实施办法**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令第149号    《质量监督检验检疫行政许可实施办法》已经2012年6月27日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局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3年1月1日起施行。  局 长  2012年10月26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规范质量监督检验检疫行政许可行为，强化对行政许可的监督管理，保护公民、法人和其他组织的合法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等法律、行政法规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各级出入境检验检疫局和质量技术监督局（以下统称各级质检部门）实施行政许可以及对行政许可的监督管理，适用本办法。  **第三条**　各级质检部门应当在法律、法规、规章规定的职权范围内，依照法定条件和程序实施行政许可。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制定的规范性文件，可以在法定的行政许可事项范围内，对实施行政许可的程序作出具体规定，但不得增设违反上位法的其他条件。规范性文件应当以公告的形式向社会公布，未经公布的，不得作为实施行政许可的依据。  **第四条**　各级质检部门实施行政许可，应当以适当方式公开实施行政许可事项的名称、依据、实施主体、条件、程序、期限、收费依据（收费项目及标准）以及需要提交的全部材料的目录等内容。  符合法定条件、标准的，申请人有依法取得行政许可的平等权利。  **第五条**　各级质检部门实施行政许可，应当遵循高效、便民原则，统一受理行政许可申请，统一送达行政许可决定。  **第六条**　各级质检部门应当建立健全实施行政许可的工作管理制度和监督制度，明确各项行政许可的实施程序以及岗位责任，加强对本级以及下级质检部门实施行政许可的监督检查。  **第七条**　各级质检部门应当健全和完善岗位培训制度，对实施行政许可的工作人员组织进行法律法规及业务知识培训，并定期进行知识更新培训。  实施行政许可的工作人员经过培训后方可从事行政许可工作。  **第二章 实施机关**  **第八条**　各级质检部门在法定职权范围内，负责行政许可的实施工作。  **第九条**　按照法律、行政法规规定以及国务院行政审批制度改革工作要求，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可以根据实际工作需要下放管理层级，将负责实施的行政许可事项交由下级质检部门实施。  决定下放管理层级的行政许可事项，应当以公告形式向社会公布。  **第十条**　上级质检部门在其法定职权范围内，可以根据实际工作需要，将其负责实施的行政许可事项委托下级质检部门实施。  委托机关对受委托机关实施行政许可的后果承担法律责任。  受委托机关应当在委托的权限范围内，以委托机关名义依法实施行政许可；不得再委托其他组织或者个人实施行政许可。  **第十一条**　委托实施行政许可的，委托机关可以将行政许可的受理、审查（核查）、决定等权限全部或者部分委托给受委托机关。  委托实施行政许可，委托机关和受委托机关应当签订委托书，委托书应当包含以下主要内容：  （一）委托机关名称；  （二）受委托机关名称；  （三）委托实施行政许可的事项名称以及委托权限范围；  （四）委托机关与受委托机关的权利和义务；  （五）委托实施行政许可的期限。  需要延续委托期限的，委托机关应当在行政许可委托书有效期届满十五日前与受委托机关重新签订委托书。  **第十二条**　委托机关应当将受委托机关和受委托实施行政许可的事项名称、委托权限范围、委托期限等内容向社会公告。受委托机关应当按照本办法第四条规定对委托实施行政许可的有关内容予以公开。  委托机关变更、中止或者终止行政许可委托的，应当及时向社会公告。  **第十三条**　各级质检部门实施行政许可，依法需要对设备、设施、产品、物品等进行检验、检测、检疫或者鉴定、专家评审的，除依法应当由行政机关实施的外，可以委托符合法定条件的专业技术组织实施。  接受委托的专业技术组织及其工作人员对所实施的检验、检测、检疫结论承担法律责任。  **第三章　实施程序**  **第一节　申请与受理**  **第十四条**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申请行政许可需要采用申请书格式文本的，质检部门应当向申请人提供格式文本。申请书格式文本不得包含与申请行政许可事项没有直接关系的内容。  **第十五条**　申请人可以委托代理人提出行政许可申请。但是，依法应当由申请人本人提出行政许可申请的除外。  委托代理人提出行政许可申请的，应当提交委托书原件以及委托双方身份证明复印件。  **第十六条**　申请人要求质检部门对公示内容予以说明、解释的，质检部门应当说明、解释，提供准确、可靠信息。  **第十七条**　申请人到质检部门办公场所提出行政许可申请，应当提交申请书以及质检部门公示的需要提交的全部材料。  申请人通过信函、电报、电传、传真、电子数据交换和电子邮件的方式提出行政许可申请，应当提交质检部门公示的符合法定形式的申请材料。  申请人应当对其提交的申请材料实质内容的真实性负责。  **第十八条**　申请人到质检部门办公场所提出申请的，申请人提交申请材料的时间为提出申请的时间。  申请人通过信函、电报、电传、传真、电子数据交换和电子邮件的方式提出申请的，质检部门的收讫时间为提出申请的时间。依法需要核对申请材料原件的，质检部门收到申请材料原件的时间为提出申请的时间。  **第十九条**　质检部门对申请人提出的行政许可申请，应当根据下列情况分别作出处理：  （一）申请事项依法不需要取得行政许可的，应当即时告知申请人不受理；  （二）申请事项依法不属于本行政机关职权范围的，应当即时作出不予受理的决定，并告知申请人向有关行政机关申请；  （三）申请材料存在可以当场更正的错误的，应当允许申请人当场更正；  （四）申请材料不齐全或者不符合法定形式的，应当当场或者自收到申请材料之日起五日内一次性告知申请人需要补正的全部内容。逾期不告知的，自收到申请材料之日起即为受理；  （五）申请事项属于本行政机关职权范围，申请材料齐全、符合法定形式，或者申请人按照本行政机关的要求提交全部补正申请材料的，应当受理行政许可申请。  **第二十条**　质检部门受理或者不予受理行政许可申请，或者告知申请人补正申请材料的，应当出具加盖本行政机关行政许可专用印章并注明日期的书面凭证，依法送达申请人。委托实施行政许可的，受委托机关出具的书面凭证，应当加盖委托机关行政许可专用印章。  申请人通过信函、电报、电传、传真、电子数据交换和电子邮件的方式提出行政许可申请，质检部门应当按照前款规定，以适当方式告知申请人行政许可申请的处理情况。  **第二十一条**　各级质检部门应当建立和完善行政许可电子管理系统，推行电子政务，方便申请人采取数据电文等方式提出行政许可申请。  **第二节 审查与决定**  **第二十二条**　质检部门对申请人提交的申请材料应当及时进行审查。  申请人提交的申请材料齐全、符合法定形式，能够当场作出行政许可决定的，应当当场作出行政许可决定。  依法需要对申请材料的实质内容进行核实的，应当指派两名以上核查人员进行现场核查。核查人员应当严格按照有关核查要求开展核查工作，不得索取或者收受申请人的财物，不得谋取其他利益。  申请人通过信函、电报、电传、传真、电子数据交换和电子邮件的方式提出申请的，核查人员在现场核查时，应当核对申请材料原件并注明核对情况。申请人不能提交申请材料原件或者核实发现申请材料与原件不符的，质检部门应当作出不予行政许可的决定。  **第二十三条**　负责检验、检测、检疫或者鉴定、专家评审活动的专业技术组织及其工作人员应当按照法律、法规、规章以及标准、技术规范的规定开展工作。  法律、法规、规章以及标准、技术规范对检验、检测、检疫或者鉴定、专家评审时限有规定的，应当符合其规定；没有规定的，应当在合理时限内完成。  **第二十四条**　法律、法规、规章规定实施行政许可应当听证的事项，或者质检部门认为需要听证的其他涉及公共利益的重大行政许可事项，质检部门应当向社会公告，并举行听证。行政许可直接涉及申请人与他人之间重大利益关系的，质检部门在作出行政许可决定前，应当告知申请人、利害关系人享有要求听证的权利。  听证程序及期限按照《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第四十七条、第四十八条的规定执行。  **第二十五条**　申请人的申请符合法定条件、标准的，质检部门应当依法作出准予行政许可的书面决定。  质检部门依法作出不予行政许可的书面决定的，应当说明理由，并告知申请人享有依法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的权利。  质检部门作出准予或者不予行政许可决定的，应当出具加盖本行政机关印章并注明日期的书面凭证，依法送达申请人。委托实施行政许可的，受委托机关出具的书面凭证，应当加盖委托机关印章。  **第二十六条**　质检部门作出的准予行政许可决定，除涉及国家秘密、商业秘密或者个人隐私的外，应当予以公开，供公众免费查阅。  **第三节 期限与送达**  **第二十七条**　除可以当场作出行政许可决定的外，质检部门作出行政许可决定的期限应当符合《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第四十二条、第四十三条规定。  受委托机关应当在委托机关规定的办理时限内完成委托事项。  **第二十八条**　各级质检部门作出行政许可决定，依法需要听证、检验、检测、检疫或者鉴定、专家评审的，所需时间不计算在本节规定的期限内。  质检部门应当将所需时间书面告知申请人。  **第二十九条**　各级质检部门依法作出准予行政许可的决定，需要颁发行政许可证件或者加贴标签、加盖检验、检测、检疫印章的，应当自作出决定之日起十日内向申请人颁发、送达行政许可证件或者加贴标签、加盖检验、检测、检疫印章。  **第三十条**　各级质检部门当场制作的行政许可文书、证件，应当即时直接送达申请人。  质检部门可以通过信函、电报、电传、传真或者电子邮件等方式，通知申请人领取行政许可文书、证件，也可以直接送达或者邮寄送达。  质检部门可以根据实际情况委托其他质检部门代为送达。  质检部门不能直接送达、邮寄送达或者委托送达的，可以通过本机关门户网站或者其他适当方式公告送达。  **第三十一条**　直接送达或者委托送达的，以申请人或者其代理人的签收日期为送达日期。  邮寄送达的，以邮寄回执上载明的收件日期为送达日期。  公告送达的，自公告发出之日起，经过六十日即视为送达。  **第三十二条**　申请人应当积极配合质检部门送达行政许可文书、证件，提供有效的联系方式。  因申请人的原因造成行政许可文书、证件不能按期送达的，由申请人承担相应的法律后果。  **第四节 变更与延续**  **第三十三条**　有应当变更行政许可的法定情形的，被许可人应当依法提出变更申请。  变更申请符合法定条件、标准的，质检部门应当依法办理变更手续。  **第三十四条**　被许可人申请延续行政许可有效期的，应当在该行政许可有效期届满三十日前向准予行政许可的质检部门提出。法律、法规、规章对提出申请期限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第三十五条**　被许可人未按规定期限提出延续申请的，可以认定为不符合行政许可延续的法定条件，质检部门不予受理该申请。  被许可人需要继续从事相应行政许可事项活动的，应当重新提出行政许可申请。原行政许可有效期届满，重新申请的行政许可决定作出前，不得从事相应行政许可事项活动。  **第三十六条**　各级质检部门对其负责实施的行政许可事项，应当以适当方式公开行政许可变更、延续的申请期限以及办理程序、未按期申请的法律后果等内容。  **第三十七条**　委托实施行政许可的，受委托机关按照委托权限以及本节规定，依法办理行政许可的变更、延续工作。  **第三十八条**　因行政许可证件遗失或者损毁，被许可人申请补办的，应当按照要求在公开发行的报刊上刊登行政许可证件补办声明。声明中应当明确补办原因、六十日异议期限、异议受理电话等内容。  准予行政许可的质检部门补办行政许可证件，应当按照原行政许可证件的内容(含发证时间)办理，不得变更或者延续。  **第五节 终止与退出**  **第三十九条**　质检部门受理行政许可申请后，作出行政许可决定前，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终止办理行政许可：  （一）申请事项依法不需要取得行政许可的；  （二）申请事项依法不属于本行政机关职权范围的；  （三）申请人未在规定期限内补正有关申请材料的；  （四）申请人撤回行政许可申请的；  （五）赋予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特定资格的行政许可，该公民死亡或者丧失行为能力，法人或者其他组织依法终止的；  （六）依法需要缴纳费用，申请人未在规定期限内予以缴纳的；  （七）其他依法应当终止办理行政许可的。  质检部门终止办理行政许可的，应当出具加盖本行政机关行政许可专用印章并注明日期的书面凭证，依法送达申请人。委托实施行政许可的，受委托机关出具的书面凭证，应当加盖委托机关行政许可专用印章。  申请人撤回行政许可申请，自收到质检部门终止办理行政许可书面凭证之日起六个月内，不得再次提出该行政许可申请。  **第四十条**　行政许可终止办理，申请人已经缴纳费用的，质检部门应当将费用退还申请人。但是，收费项目涉及的许可环节已经完成的除外。  **第四十一条**　依法应当吊销被许可人取得的行政许可证件，由准予行政许可的质检部门按照《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及总局规章等办案程序规定，作出吊销行政许可证件的行政处罚决定。  准予行政许可的质检部门可以自行或者指定下级质检部门按照《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及总局规章等办案程序规定，依法履行调查取证、权利告知、组织听证等程序性义务以及送达和执行行政处罚决定。  各级质检部门在监督管理工作中，发现被许可人存在应当吊销行政许可证件的违法情形的，应当及时将吊销行政许可的事实、理由、依据以及有关证据材料逐级上报或者通报准予行政许可的质检部门。  **第四十二条**　依法应当撤销被许可人取得的行政许可，由准予行政许可的质检部门作出撤销行政许可的决定。  作出撤销行政许可决定前，准予行政许可的质检部门可以自行或者指定下级质检部门依法履行告知义务，说明撤销行政许可的事实、理由和依据，听取被许可人的陈述、申辩或者组织听证，并依法送达和执行撤销行政许可的决定。  各级质检部门在监督管理工作中，发现被许可人存在应当撤销行政许可的情形的，应当及时将撤销行政许可的事实、理由、依据以及有关证据材料逐级上报或者通报准予行政许可的质检部门。  **第四十三条**　因行政许可所依据的法律、法规、规章修改或者废止，或者准予行政许可所依据的客观情况发生重大变化等原因，确需变更或者撤回被许可人取得的行政许可，由准予行政许可的质检部门作出变更或者撤回行政许可的决定。由此给被许可人造成财产损失的，准予行政许可的质检部门应当依法给予补偿。  变更或者撤回行政许可的决定，应当载明变更或者撤回行政许可的事实、理由和依据。变更或者撤回行政许可决定的送达和执行，准予行政许可的质检部门可以自行或者指定下级质检部门办理。  **第四十四条**　有下列情形之一的，准予行政许可的质检部门应当依法办理有关行政许可的注销手续，并予以公告：  （一）行政许可依法被撤销、撤回，或者行政许可证件依法被吊销的；  （二）行政许可有效期届满未延续的；  （三）赋予公民特定资格的行政许可，该公民死亡或者丧失行为能力的；  （四）法人或者其他组织依法终止的；  （五）被许可人申请注销行政许可的；  （六）因不可抗力导致行政许可事项无法实施的；  （七）其他依法应当注销行政许可的。  各级质检部门对前款规定的事项，应当定期进行核查汇总，并逐级上报准予行政许可的质检部门，由其依法办理注销手续。  **第四章 监督管理**  **第一节 行政许可评价**  **第四十五条**　省级以上质检部门应当根据工作需要，对本机关以及下级质检部门实施行政许可的情况及存在的必要性进行评价。  **第四十六条**　质检部门可以自行对行政许可进行评价，也可以委托相关评估机构或者组织进行评价。  评价可以采取听证会、论证会、座谈会等形式听取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以及专家学者的意见、建议。  **第四十七条**　行政许可评价的内容应当包括：  （一）实施行政许可的总体状况；  （二）实施行政许可的社会效益和社会成本；  （三）实施行政许可是否达到预期的管理目标；  （四） 行政许可在实施过程中遇到的问题和原因；  （五）行政许可继续实施的必要性和合理性；  （六）其他需要进行评价的内容。  **第四十八条**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完成评价后，应当对评价的行政许可事项提出取消、保留、合并或者下放管理层级等意见和建议，并形成评价报告，报送行政许可的设定机关。  省级质检部门完成评价后，应当将评价报告以及意见和建议报送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对地方性法规设定的行政许可事项，评价报告以及意见和建议应当报送行政许可的设定机关，并抄报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第二节 内部监督**  **第四十九条**　上级质检部门应当通过定期或者不定期的行政执法责任制考核检查、行政许可案卷评查、行政许可专项检查、投诉案件处理等形式，加强对下级质检部门实施行政许可的监督检查，及时发现和纠正行政许可实施中的违法或者不当行为。  **第五十条**　委托实施行政许可的，委托机关应当通过定期或者不定期核查等方式，加强对受委托机关实施行政许可的监督检查，及时发现和纠正行政许可实施中的违法或者不当行为。  **第五十一条**　质检部门应当建立健全监督制度，加强对专业技术组织及其工作人员的监督，及时发现和纠正检验、检测、检疫或者鉴定、专家评审活动中的违法或者不当行为。  **第三节 对被许可人的监督**  **第五十二条**　各级质检部门应当建立健全行政许可后续监督检查制度，加强对本行政区域内被许可人的后续监督，检查被许可人是否持续保持获得行政许可时的条件和要求。  **第五十三条**　各级质检部门对本行政区域内的被许可人，应当建立监督检查档案。  质检部门依法进行监督检查时，应当将检查情况和处理结果予以记录，由监督检查人员签字后归档。  **第五十四条**　各级质检部门依据监督检查职权或者通过举报、投诉、上级部门交办等途径，发现本行政区域内被许可人的违法行为线索，应当及时进行核实、处理。核实情况以及处理结果按照本办法第五十三条规定归档。  各级质检部门按照行政处罚管辖原则，对被许可人的违法行为依法实施行政处罚的，应当将被许可人的违法事实、处理结果逐级上报或者通报准予行政许可的质检部门。  **第五十五条**　各级质检部门实施监督检查时，可以依法查阅或者要求被许可人报送有关材料，对被许可人生产经营的产品依法进行抽样检查、检验、检测，并对其生产经营场所依法进行实地检查。  有关法律、法规、规章对监督检查的方式、手段和措施等有明确规定的，依照其规定执行。  被许可人应当配合行政执法人员的监督检查，如实提供其从事相应行政许可事项活动的有关情况和材料。  **第五十六条**　各级质检部门实施监督检查时，不得妨碍被许可人正常的生产经营活动，不得索取或者收受被许可人的财物，不得谋取其他利益。  **第五章 法律责任**  **第五十七条**　违反本办法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上级质检部门责令限期改正，并通报批评：  （一）未按本办法第四条规定将行政许可的有关内容予以公开的；  （二）未按照本办法第五条规定统一受理行政许可申请、统一送达行政许可决定的；  （三）委托实施行政许可，未将行政许可委托书主要内容或者变更、中止或者终止情况向社会公告、公开的；  （四）未将行政许可变更、延续的申请期限或者办理程序、未按期申请的法律后果等内容予以公开的；  （五）未按照本办法规定履行后续监督检查职责或者建立行政许可监督检查档案的。  **第五十八条**　违反本办法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本机关或者上级质检部门责令改正，通报批评，并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追究相应的法律责任：  （一）没有法定依据或者不按照法定项目和标准收取行政许可费用的；  （二）终止办理行政许可，未按本办法规定退还行政许可费用的；  （三）吊销、撤销、撤回、注销行政许可，未按规定程序实施，造成严重后果的；  （四）办理行政许可、实施后续监督检查过程中，妨碍他人正常的生产经营活动造成严重影响或者索取、收受他人的财物，谋取其他利益的；  （五）未依法履行行政许可后续监督检查职责或者对发现的违法行为未依法进行上报和通报，造成严重后果的。  **第五十九条**　违反本办法第十条规定，受委托机关超越委托权限范围或者再委托其他组织和个人实施行政许可，实施行政许可违法或者不当的，由委托机关责令改正，予以通报，并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第六十条**　违反本办法二十三条规定，承担检验、检测、检疫或者鉴定、专家评审任务的专业技术组织及其工作人员未按照法律、法规、规章以及标准、技术规范的规定开展工作的，由质检部门责令改正；情节严重的，处以三万元以下罚款，直至取消其从事与行政许可相关的检验、检测、检疫资格。法律、法规、规章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专业技术组织及其工作人员违法实施检验、检测、检疫或者鉴定、专家评审，给当事人合法权益造成损害的，依法承担赔偿责任。  **第六十一条**　被许可人不能持续保持应当具备的条件和要求继续从事行政许可事项活动，或者不配合、拒绝质检部门依法进行监督检查的，责令改正；拒不改正或者逾期未改正的，处以三万元以下罚款，直至撤销其行政许可。法律、法规、规章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第六章 附 则**  **第六十二条**　各级质检部门实施行政许可，应当使用统一规范的行政许可文书。实施行政许可过程中形成的材料，应当按照国家档案管理的有关规定立卷归档。  **第六十三条**　除公告期限外，本办法规定的质检部门实施行政许可的期限以工作日计算，不含法定节假日。  **第六十四条**　国家认证认可监督管理委员会以及质量监督检验检疫系统内法律法规授权的组织在法定职权范围内实施行政许可，依照本办法执行。  **第六十五条**　本办法自2013年1月1日起实施。《质量监督检验检疫行政许可委托实施办法》（国家质检总局令第64号）同时废止。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在本办法施行前公布的有关行政许可的规章与本办法规定的行政许可实施程序不一致的，以本办法为准。 |